

최초게시일: 2022.05.27.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정원 외 2%)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숭실대학교

송실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① 교육이념(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교육목적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쳐 **인류의 번영과 국가 ·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수정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건학이념에 따라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독교 과목과 채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Contents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3. 지원자격	5
4. 지원자격 심사기준	8
5. 전형방법	12
6. 최종 선발기준	12
7.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 절차 안내	13
8. 합격자 발표	14
9. 등록안내	15
10. 전형료	16
11. 지원자 유의사항	17
12. 제출서류	18
1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20
1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21
15.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	22
▶ <별표1>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	23
▶ <별표2>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24
▶ <별표3>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25
▶ 안내부서 전화번호 안내	26
▶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자료 제공 안내	27
▶ 레지던스홀 안내	27
▶ 교내 건물 배치도	28
▶ 교통 안내	29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 수시모집(재외국민 포함)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 본교 내에서도 모든 전형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사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하기 바람(동일전형에서 모집단위 복수지원 불가, 전형 간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함)
-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함

2. 복수지원 금지

- ☐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불가)
-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포함) 간 복수지원을 금지함(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3. 이중등록 금지

-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함
-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문서등록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문서등록 등) 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문서등록 등)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문서등록 등)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문서등록 등)하는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타 대학에 총원합격자는 총원 기간 중 ‘반드시’ 환불 신청하여야 함)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함
- ☐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합격)을 취소함.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총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란 등록기간 내 문서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본교 지원 관련 사항

-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지원자격 관련 서류심사 결과 포함)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대학 모집요강 공통 기재사항>

☐ 수시모집 지원·전형 방법과 관련한 사항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 이중 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신청 관련 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 추후 공지 예정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합격)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 누락이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 및 입학할 수 없음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2.07.04.(월) 10:00 ~ 07.07(목) 18:00	• admission.ssu.ac.kr • 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필답고사장 안내	2022.07.08.(금) 10:00	• admission.ssu.ac.kr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 수험생 유의사항 필독
필답고사	2022.07.14.(목) 10:00	• 해당 시험장	- 신분증, 수험표 지참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07.15.(금) 11:00 (예정)	• admission.ssu.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1단계 합격자 서류제출	2022.07.18.(월) ~ 07.20.(수) 10:00~17:00	• 우편제출 • 등기우편 : (우 :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관리팀 재외국민 전형 담당자 앞	- 제출서류 구비(p.18~19 참조) -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원본 제출 -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해 제출 인정 [마감일자 등기우편 소인 유효]
최초합격자 발표	2022.09.30.(금)	• admission.ssu.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최초합격자 문서 등록	2022.12.16.(금) ~ 12.19.(월)	• admission.ssu.ac.kr	- ‘문서등록’으로 등록의사만 확인 (별도 예치금 없음) - 자세한 등록시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합격자 안내사항에 명시 예정
충원합격자 발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12월 중)	• admission.ssu.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등록금 납부	2023.02.07.(화) ~ 02.09.(목)	• 전국 지정은행 ※ 자세한 등록납부 기간 및 충원합격 발표 시간은 합격자 안내사항 참조	- 본교 합격자에 한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를 통해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등록) 여부와 합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를 하지 않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 바람

※ 위의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포함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명	모집단위		개설전공	모집구분 및 모집인원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2	모집인원 제한없음
		국어국문학과			2	
		영어영문학과			3	
		중어중문학과			2	
		철학과			2	
		스포츠학부		생활체육전공 스포츠사이언스전공	3	
	법과대학	법학과			2	
		국제법무학과			2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실천전공 사회복지정책·행정전공	2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행정정보관리전공	3	
		정치외교학과			2	
		정보사회학과			2	
		언론홍보학과			2	
경상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2	
		글로벌통상학과			1	
	경영대학	금융학부		디지털금융전공 글로벌금융전공	1	
자연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1	
		의생명시스템학부		생명정보학전공 생명공학전공	2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2	
		건축학부 건축학·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2	
	IT대학	컴퓨터학부		시스템소프트웨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2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	
			IT융합전공		2	
		글로벌미디어학부		미디어공학전공 컨텐츠공학전공	3	
		소프트웨어학부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전공	2	
계					53	모집인원 제한없음

※ 학과명 변경 알림: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고 있으며,
해당 학과(부) 입학자는 의무적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5년 과정임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원에 관계없이 본교
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함

3. 지원자격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의 의미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하고, 국내와 외국 간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최소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이수 하여야 함)

※ 외국 검정고시(예 : 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 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유지해야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이 낮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해당국의 2023학년도 3월 졸업예정자)

가. 지원자격 유형

유형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유형1 (중·고교 과정 국외 이수자)	외국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 자격인정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영주권 취득 전·후 자격 인정 기준 기간 내에 국내 주민등록은 이민 말소가 되어야 함	[외국 이수 학력 요건]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기간을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재학기간 관련 설명 : 재학기간 '1년' 이라 함은 해당국이 학기제인 경우 2개 학기, 3 Term제 인 경우 3개 Term, Quarter제 인 경우 4개 Quarter 전부를 의미함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재외국민 자녀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자녀 - 외국 현지 자영업자 - 외국 현지법인 취업자 - 국외파견 교직원 - 국외 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외국유학연수자(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유형2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외국에서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 초,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유형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교가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해야 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은 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실시하는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기 바람

나.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가)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曆年, Calendar year)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 목적을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재학인정기준으로만 적용,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의 1개 학년으로 함 -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제출서류 (p.18~19 참조)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여권 사본(부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나)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소속기관 내 인사발령 등 정식 국외 파견 근무(상근)의 경우만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고, 해외연수(교육) 또는 휴직 후 국외 취업하는 경우는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음

다)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3)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내법인의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4)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등

※ 국내법인 소속으로서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인정하나, 현지채용 또는 개인이 투자하여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1)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2)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마) 기타 재외국민(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의 인정 범위

- 다음의 국내 기독교 관련 기관에 가입된 교단 또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

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ww.kncc.or.kr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cck.or.kr
3	한국교회연합	www.ccik.kr
4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home.kaicam.org
5	한국교회총연합	www.ucck.org

※ 단, 위의 기관에 가입된 교단 또는 교회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교단 및 교회는 제외

2)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가) 국외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2) 국내 초·중등학교 중복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나)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1)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2)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2)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는 국외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함
 (국내 소재 학력미인정 외국인 학교 과정 이수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2)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생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3)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유아원, 유치원, 여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 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불인정)
- 4)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정고시 학력인정 방법을 인정함)
- 5)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인 초·중·고·대학(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함, 6-3-3 학제가 아닌 학교(13학년제 학교 등)에서 수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학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학사일정표**를 제출해야 함
 ※ 학사일정표에는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방학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슈어 등도 제출 가능(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6)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 12학년제에서 13학년제로 또는 그 반대로 전학하여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1개 학년에 한하여 이수한 학년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7)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재학 인정기준으로만 적용,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 8)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나. 외국근무 인정기준

- 1) 보호자의 외국근무가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계속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자의 재외국민 인정기간은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거주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예 : 지원자가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1년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외국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외국 고등학교의 최소 재학 기준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외국근무 공무원, 상사직원의 경우, 국외로 파견되어 상근한 경우만 해당되며, 단순 유학,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해외지사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보호자의 외국근무 자격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 예 :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종료 후 해외 현지법인에 취업 할 경우 등

다. 월반과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전·편입학 시가 아닌 당시 연속적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인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이수학기(12년 과정, 24개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라. 외국영주 교포 자녀 중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는 외국영주 교포 자녀로서의 지원 자격이 없음

마.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2)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중복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을 의미하며, 단순누락(*)은 대체할 수 없음)

* 단순누락 : 질병, 휴학, 자퇴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 전·편입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등

3)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 G10-1까지 국내교 이수 후, 3년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G10-1부터 국외교를 인위적으로 중복하여 재학하는 경우 등]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바. 외국학교 재학 및 국외 체류기간 기준표

재학형태	대 상	구 분	근무 기간	거주(영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외국 중·고등학교 과정에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 반드시 포함 ※연속 3년 · 비연속 3년 모두 인정	외국영주 교포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자녀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자녀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자녀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 1) 외국 체류기간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 2) 외국 체류기간은 통산 재학기간이 아닌 1개 학년 단위로 계산함
- 3)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함
- 4) 보호자(영주권자의 경우 부모)의 국외 근무·거주(영주)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1년(2개 학기)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5) 국외거주·체류기간은 각 지원자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6)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의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 근무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 자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지원자격 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음.

<참고> 외국학교 수학기간 인정 / 불인정 사례

□ 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 (중복수학한 1학기 외국학교 수학하기로 인정)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대학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 시 인정)
외국학교 (10학년제)																			고1		고2		고3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 (13학년제 학교에서 이수한 9,10학년 -> 8,9학년 이수로 인정)
외국학교 (13학년제)									<<	<<			
외국학교 (12학년제)													

□ 불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월반 2개 학기 이상으로 23학기 미충족)
외국학교1													
외국학교2							월 반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미이수 학기 2회 이상)
외국학교1													
외국학교2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1년) 미만 이수]
외국학교													

5.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비 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1단계	필답고사(국어 및 영어)	1단계 선발 : 모집단위 별 모집인원의 3배수
	2단계	서류평가	지원자격 심사

가. 원서접수 시 본교에서 요구한 자격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초지원자격 검증 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함

나. **모든 지원자**는 필답고사를 응시해야 함 [모집인원의 3배수 이하로 지원한 모집단위의 지원자 및 정원외 대상자(12년 이상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포함]

다. 1단계 합격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변조된 서류제출 등이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함

라. 전형요소 세부사항

구 분	1단계 - 필답고사	2단계 - 서류평가
전형대상	지원자 전원	1단계 합격자(3배수)
고사장발표	2022.07.08.(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
일시	2022.07.14.(목) 10:00	서류접수 기간 : 2022.07.18.(월) ~ 07.20.(수)
전형장소	해당 고사장	추후 공지
출제방식	국어, 영어 (객관식)	-
고사시간	총 90분	-
최고점/최저점	100점 / 0점	지원자격 심사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제출서류

※ 필답고사 결시자 및 '0'점 취득자, 중도포기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2022.07.08.(금)** 공지하는 수험생 안내사항 참조

※ 필답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 진행에 있어 특별관리(철회어 사용 등)가 필요한 수험생은 미리 입학처에 연락하여 상의 바람

6. 최종선발 기준

가. 1단계 합격자 : 모집단위별로 동점자가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모두 선발

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며, 지원자의 수학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

다. 필답고사 결시자(중도포기자 포함), 서류 미제출자, 서류 미비자,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원합격자는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함

마.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국어 점수가 높은 자
 - ② 국어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 ③ 영어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 ④ 외국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긴 자

[단, 고배점 다득점자로 동점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

7.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 절차 안내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admission.ssu.ac.kr로 접속하여 원서접수 배너를 클릭 또는 ◦ www.jinhakapply.com 에 접속하여 송실대학교 검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보호자 ID로 가입 시 정정 불가)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확인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 관련 동의서 확인
↓	
원서작성 및 사진첨부	◦ 지원하는 전형유형, 모집단위, 개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반명함판 사진(3×4cm) 사용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지원자의 반명함판 사진(JPG파일)을 업로드
↓	
원서접수 시 '기초지원자격 검증서류' 업로드(PDF)	◦ 원서 접수 시 기초 지원자격 검증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함(총 2종) 1. 지원자격 관련 제출: 제출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 2.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 서류 구비(p.18~19 참조)
↓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 확인 (결제가 끝난 뒤 입력사항 수정 절대 불가) ◦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형료 결제	◦ 결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	
수험표 출력	◦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	
필답고사	◦ 필답고사 응시(지원자 전체) ◦ 1단계 합격자 발표
↓	
서류 제출	◦ 1단계 합격자는 본교가 요구한 서류 원본을 우편 제출
↓	
서류평가	◦ 서류심사(지원자격여부 검증)
↓	
최초 합격자 발표	◦ 최초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및 등록금 납부]
↓	
충원 합격자 발표	◦ 충원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및 등록금 납부]

※ 개인정보 자료 수집 및 활용 동의

- ① 본교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원서접수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②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는 입학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를 입시와 관련된 업무(SMS, ARS업체, 입시 관련 유관기관 등) 및 본교 교육·연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③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국/영문),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모집단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연락처, 주소, 학력사항, 재학/출신고교명, 재학/출신고교 연락처(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졸업(예정연도), 영주권 번호, 영주권 취득일, 출국일, 귀국일, 국적, 국외 거주기간, 기타 본교 제출서식(학력조회동의서, 재직사실 조회동의서, 사실증명발급신청서)

8. 합격자 발표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문서등록 기간 안내

최초합격자 발표일	발표 방법	문서등록 기간
2022.09.30.(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	2022.12.16.(금) ~ 12.19.(화)

※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나. 총원합격자 발표

※ 12월 중 총원합격자 발표 일자 및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
[수험생은 차수별로 반드시 합격자를 조회(확인)할 의무가 있음]

다. 합격통지서(합격증) / 등록금(납입)고지서 출력

본교에서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차수별 합격자 발표 기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사용해야 함(출력기간 이후에는 출력 및 재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출력하여 보관 바람. 각종 증빙 및 제출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력 보관 바람)

본교 합격자에 한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를 통해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등록) 여부와 합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화통보를 하지 않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 바람

9. 등록 안내[※ 최종 등록 완료는 문서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야 함]

가. 문서등록 안내

★ 등록예치금 : 0원 ('문서등록'으로 등록 의사만 확인)

1) 문서등록 기간

구 분	기 간
최초 합격자	2022.12.16.(토) ~ 12.19.(화)

※ 자세한 등록일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합격자 안내사항**에 명시 예정

※ 최초 및 총원 차수별 등록마감시간(향후 발표)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으며, **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불합격 처리함**

2) 등록방법

등록기간 중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 공지되는 **합격자 안내사항**에 따라서 **문서등록** 해야함

※ 합격통지서는 차수별 합격자 조회 기간 외에는 출력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할 것

3) 문서등록 확인 방법

정상 등록 여부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본교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전화상으로는 등록(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문서등록 후 반드시 확인할 것,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문서등록은 기존 '등록예치금 납부'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모든 등록 절차가 완료됨

나. 등록금 납부

1) 등록기간

구 분	기 간
등록금 납부	2023.02.07.(화) ~ 02.09.(목)

※ 등록마감시간(향후 발표) 이후에는 납부(등록)를 받지 않으며, **등록마감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불합격 처리함**

2) 등록장소 및 금액

구 분	등 록 장 소	등록금 금액
문서등록 완료자	전국 지정은행	향후 공지 예정

3) 등록방법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등록기간 중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제출하고 등록 또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등록함

※ 자세한 등록시간, 등록금액 등 세부사항은 향후 합격자 안내사항에 명시 예정

4) 등록확인 방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향후 안내사항 공지 예정

5)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 본교 장학팀 02-820-0159, 02-828-7450

다. 등록금 환불 안내

기 간	2023.02.10.(금) 10:00 ~ 02.16.(목) 18:00까지 ※ 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2항관련)에 따름
환불 방법	환불신청 기간 내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 온라인 환불신청을 완료해야 함 ※ 환불(입금)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하며, 전형이 종료된 후 일괄입금 처리하므로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람 ※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10. 전형료

가. 단계별 전형료(접수수수수료 5,000원 포함)

전형 단계	전형료
전형료(인터넷 접수 시 전형료 결제)	200,000원

나. 전형료 일부 환불

구 분	환불금액	비 고
1단계 불합격자	100,000원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환불처리함 - 서류제출자 중 지원자격 미달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필답고사 결시자		
서류 미제출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원서접수 완료 후(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접수된 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본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환불할 수 있음(단, 고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고사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다. 전형료 반환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 1) 반환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반환대상자임을 선택해야 함
- 2) 제출기간 : 2022.07.18.(월) ~ 07.20.(수)(마감일자 소인유효)을 엄수하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 불가
- 3)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환불이 이루어짐(2022년 10월 중 환불 예정)

구분	제출서류	추가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지원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차상위계층 (택 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1부	※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발급) 1부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격서류는 서류 제출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2022.07.11.(월) 이후]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11. 지원자 유의사항

- 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 나. 원서접수 시 지원자의 연락 가능한 국내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다. 필답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수험생의 고사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해야 함
 - ※ 2022.07.08.(금) 10:00 수험생 유의사항 공개 예정
- 라. 입학전형 평가성적 및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입시성적이 저조하여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시 모집요강 및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바. 본교가 요청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기재/위·변조된 서류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023학년도 서류제출 관련 주요 변경사항

[원서접수 시] 기초지원자격 검증서류 온라인 업로드

- 원서접수 사이트(www.jinhakapply.com)에서 원서접수 시 사전 제출서류 PDF(2건) 업로드 필요
 - ▶ 지원자격 관련 서류: 아래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순서대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①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② 초·중·고 성적증명서 각 1부
 - ③ 국외 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 ⑤ 보호자 국외근무 관련 서류(재직/경력증명서, 세금관련 서류 등)[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1부
 - ⑥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①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② 초·중·고 성적증명서 각 1부
 - ③ 국외 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④ 여권 사본(학생 1부)
 - ▶ 출입국 관련 서류 : 아래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류(중·고교과정: 부·모·학생 각 1부 / 전 교육과정: 학생 1부)
- **북한이탈주민**은 해당없음: 필답고사 합격 후 원본 서류 제출

[1단계 합격자] 서류 제출

- 필답고사 합격자는 제출서류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상세 내용은 하단 안내사항 참고)
 - ▶ 사전에 PDF로 제출한 서류도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12. 제출서류 안내

지원구분	제출서류
유형1 중·고교 과정 국외 이수자	■ 기초지원자격 검증 서류[원서접수 시 PDF 업로드]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재학) 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전입, 전출일 명시)를 제출 ③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각 1부]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학생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보호자 재직(경력) 관련 증빙서류 [보호자] ※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 제출(본사 인사권자 발행 서류) ※ ‘상사직원’의 경우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명, 파견기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함 ※ ‘현지 취업자’의 경우 소속부서, 직위, 근무기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함 ※ ‘현지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납입증명서(법인세 또는 소득세) 제출하여야 함 ⑥ 여권 사본 [부·모·학생 각 1부] ⑦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학생 각 1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원본서류 제출[필답고사 합격자]: 제출기간[2022.07.18.(월)~07.20.(수)] [공통 서류] ① [중요] 기초지원자격 검증서류 원본 제출 필수 ※ 기간 내 원본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② 재외국민 등록부등본(해외거주사실확인서) [부·모·학생 각 1부] ③ <별표1>학력조회동의서[본교 양식] ④ <별표3>사실증명발급신청서[본교 양식] [부·모·학생 각 1부] ⑤ 지원자종합기록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⑥ 외국학교조사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외국 영주교포 자녀 추가 제출서류] ⑦ 영주권 사본 [부·모·학생 각 1부] ⑧ 주민등록말소자 등본(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부·모·학생 각 1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추가 제출서류] ⑨ 정부초청(추천)서 [보호자] ※ 정부의 초청 및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는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서 첨부 [국외근무자의 자녀 중 ‘해외상사직원’ 추가 제출서류] ⑩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수리)서 사본 ※ 본사 또는 은행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⑪ <별표2>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현지법인 취업자 자녀’ / ‘현지 자영업자 자녀’ 추가 제출서류] ⑫ 해외사업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⑬ 지원자격 내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외국정부가 발행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입 증명]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가 없거나 면세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법령 및 학생이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현지법인 취업자 및 현지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국 법령 또는 회사 대외비 등의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제출

지원구분	제출서류
	[선교파견 요원의 자녀 추가 제출서류] ⑭ 선교사 활동 증명 [각 1부] - 소속 당회장 추천 - 선교파견사실확인서(파견기간 명시 必) - 선교사 파송기관 법인등록증 - 회원교단 소속증명서 [기타 재외국민 자녀 추가 제출서류] ⑮ 주민등록등본 [부·모·학생 각 1부] ※ 부·모·학생이 한세대 안에 있는 경우 1부만 제출
유형2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기초지원자격 검증서류[원서접수 시 PDF 업로드]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재학) 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전입, 전출일 명시)를 제출 ③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여권 사본 [학생 1부] ⑤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1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원본서류 제출[필답고사 합격자]: 제출기간[2022.07.18.(월)~07.20.(수)] ① [중요] 기초지원자격 검증서류 원본 제출 필수 ※ 기간 내 원본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②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양식] ③ 사실증명발급신청서[본교 양식] [학생 1부] ④ 지원자종합기록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⑤ 외국학교조사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유형3 북한이탈주민	■ 원본서류 제출[필답고사 합격자]: 제출기간[2022.07.18.(월)~07.20.(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행(구청, 군청)] ② 국내고등학교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아래 예시 중 1개 이상 제출] -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행)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④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자는 모두 제출

■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p.22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 제외)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별표> 서류 작성 유의사항

1. 일자 및 서명 등 공란 없이 자필 작성
2. <별표3> 학력조회동의서: 각 학교별 전화번호 및 FAX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국가번호, 지역번호 모두 포함)

1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보호자(부/모)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만 해당]

- 1) 근무(거주) 국가: 외국 근무(거주)한 외국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 2) 직장 근무여부: 보호자의 재직 여부를 선택 후 근무기간을 입력, 배우자는 재직 중인 직장이 없을 경우 '거주(직장없음)'으로 선택 후 거주기간을 입력
- 3) 근무(거주) 기간: 외국 근무(거주) 기간은 **학생의 중·고교(7~12학년) 과정**이 포함된 기간만 입력
- 4) 학생 이수학기: 해당 기간 중 학생의 이수 학기를 선택하여 입력

나. 지원자 학력사항 입력 시 유의사항 [중·고교과정/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만 해당]

- 1) 소재국: 재학한 학교의 소재 국가명을 검색하여 입력
- 2) 학교명: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학교까지 순서대로 기재
- 3) 학기개시일: 입학 또는 전/편입한 학기의 개시일 입력
- 4) 재학기간: 재학한 학교의 재학기간을 정확히 입력
※ 전입 시 '전입일자'를 시작일로 기입, 전출 시 '전출일자'를 종료일로 기입
- 5) 학년제: 재학한 학교의 학년제를 선택하여 기입(ex. 초6-중3-고3 → 12년제)
- 6) **학교 연락정보 입력(국외학교 입력):** 학교주소, 전화번호, 팩스, 대표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입력
※ 국외학교: 재외한국학교, 국외현지학교 모두 포함

다. 기초지원자격 검증서류 업로드 유의사항

1) 지원자격 서류 PDF 업로드

아래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순서대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파일 용량 제한: 40MB 이하]

※ 각종 증명서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스캔하여 업로드

※ 파일명 예시) **OOO(성명)_지원자격 서류.pdf**

- | |
|--|
| ①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② 초·중·고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국외 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⑤ 보호자 국외근무 관련 서류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1부
⑥ 여권사본(부·모·학생 각 1부) |
|--|

2)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중·고교과정: 부·모·학생 각 1부[총 3부] / 전 교육과정: 학생 1부)'를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파일 용량 제한: 10MB 이하]

※ 파일명 예시) **OOO(성명)_출입국 사실증명서.pdf**

재외국민전형 제출서류 안내	▶ 지원자격 관련 서류: 아래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순서대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 ①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② 초·중·고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국외 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⑤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1부 ⑥ 여권사본(부·모·학생 각 1부) ▶ 출입국 관련 서류: 아래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취합 후 스캔하여 업로드 ①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류(부·모·학생 각 1부)
★ 지원자격 관련서류	업로드
★ 출입국 사실증명서	업로드

[원서접수 사이트 내 파일 업로드 화면]

1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원본)은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우편접수」를 시행함

나. 서류는 각 1부씩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PDF로 제출한 서류도 원본 서류 제출하여야 함

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별도의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불필요]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부득이하게 사본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원본서류로 인정(단,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스캔 및 복사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 협약, 발급기관 및 가입국 안내는 p.22를 참고 바람

라.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 접수 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원본대조 확인해드립니다

마. 최종 합격 후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 중 **학력 및 자격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자는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바. 제출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가능)

사.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아.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자.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예 : 보호자가 국외 파견 상사직원으로 근무 후 현지법인에 취업하여 계속 지원자격을 이어갈 경우 두 가지 자격 기준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

차.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본교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카. 고등학교 졸업일 기준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는 최종합격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적서류 등)를 졸업일 시점에 맞춰 추가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반환함)

타.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파. **입학전형에 중요한 사항을 위·변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하. 합격자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상이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참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1.09.16.기준)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002-0251)]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15.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2022년 기준)

국 가 명	학 교 명
일본(4개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13개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2개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베트남(2개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2개교)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학교
계	16개국, 34개교

<별표1>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SOONGSIL UNIVERSITY

Sangdo-ro 369, Dongjak-gu, Seoul. 06978, Korea(*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

Tel: +82-2-820-0049

Fax: +82-2-820-0022

e-mail: mjh@ssu.ac.kr

Application Date(제출일자) :*

School Name : (영문)*

School Address : (영문)*

School Phone :*, Fax :*, E-mail :*

Subject : Student Info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We are pleased to have (*학생영문이름), a current or former student at your school, applying to study at Soongsil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ppreciated. Responses will be used only for purposes of this application and will be kept confidential. For your reference, the student's Letter of Consent is below.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Sang-Hoon Cho, Ph.D.
Vice President of Admissions
Soongsil University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3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oongsil University as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국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 *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or transfer if applicable): *	☐ Correct ☐ Incorrect
Name(영문) and Signature: *	Additional Comments: _____
Date(제출일자): *	Printed Name and Signature: _____

(*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

<별표2>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국외상사직원)

본교수험번호 :

수험생 성명 :

회사명	해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회사주소 및 연락처 (한국 본사 인사팀)	

재직자 명		재직자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E-mail			
재직기간	자격인정기간		

재직사실 동의

- 본인은 이 동의서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이 아닌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송실대학교가 본인의 재직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귀교가 이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2022년 월 일

재 직 자 성 명 : _____(서명)

송실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3>

수험번호	
------	--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위임하는 사람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송실대학교 입학처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 송실대학교 입학처)	성명	송실대학교 입학처 재외국민 전형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처 02-820-0049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의사항>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학생 및 부·모 모두 제출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학생 본인만 제출

■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대표전화 02-820-0114)

안내 및 문의	안내부서	전화번호
입학관련 안내 (학생부우수자, 논술우수자, 실기전형)	입학처 입학관리팀	02-820-0050 ~ 53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SSU미래인재, 고른기회,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처 입학사정관팀	02-820-0011 ~ 12
휴·복학 등 학적 안내	교무처 학사팀 (대표전화 02-820-0150)	02-820-0152
수강신청 안내		02-828-7402
전과, 복수/부/연계전공 안내		02-828-7403
융합창업 연계전공 안내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지원팀	02-820-0016
융합전공 안내	교육과정혁신센터 융합교육혁신팀	02-828-7437
교직이수 안내	교무처 교직팀	02-828-7404
병사관련 안내	총무처 예비군연대	02-820-0180
등록 및 등록금 안내	총무처 재무·회계팀	02-820-0184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처 장학팀 (대표전화 02-820-0159)	02-820-0166
교내장학금 안내		02-820-0167
교외장학금 안내		02-820-0819
ID카드(학생증) 발급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02-820-0065
민원 및 일반 문의사항		02-820-0067~9
레지던스홀 입사 안내	레지던스홀 관리운영실	02-2621-0100, 0200,0300,0400
장애학생 지원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02-820-0060
단과대학 및 학과(부)안내	인문대학 사무실	02-820-0303
	자연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03
	법과대학 사무실	02-820-0463
	사회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92
	경제통상대학 사무실	02-820-0572
	경영대학 사무실	02-820-0543
	공과대학 사무실	02-820-0603
	IT대학 사무실	02-820-0932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사무실	02-829-8220

■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자료 제공 안내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된 공지사항, 각종 자료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음. 수험생 및 학부모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의 각종 메뉴를 이용하면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 문의사항: 입학전형안내 → Q&A 게시판 이용

■ 레지던스홀 안내 [운영관리실 ☎ 02-2621-0100, 0200, 0300, 0400]

가. 규모 및 입실자격

입사인원	1,403명(신입생 및 재학생)
입사자격	① 1순위 : 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 거주자 ② 2순위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거주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역과 상관없이 우선 선발
선발방법	1순위 → 2순위 순으로 선발

※ 입사자격 및 선발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관리실(02-2621-0100)로 문의

나. 시설현황

- 1)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건축
- 2) 사생실 725실(1인실 41실, 2인실 648실, 4인실 10실, GH/A형 11실, GH/B형 15실)
- 3) 각 방의 기본시설로 침대, 책상, 냉장고, 의자, 책꽂이, 옷장, 행거, 신발장 등 구비
- 4) 냉·난방시설 완비, 각 호실별 샤워실, 세탁실, 무인택배함 등 설치
- 5) 체력단련실에 각종 운동기구 설치
- 6) 휴게실에 TV 설치 등 휴식시설 완비
- 7) 각 방에 LAN(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공유기 설치
 - 입사신청 : 23년 1월 말 운영관리실(02-2621-0100~0400)로 문의
 - 홈페이지(http://ssudorm.ssu.ac.kr)에 접속하여 "생활관 소개(시설현황)" 선택하면 내부 전경을 볼 수 있음

■ 교내 건물 배치도



① 베어드홀 (Baird Hall)	⑩ 벤처중소기업센터 (Entrepreneurship & Small Business Center)
② 송덕경상관 (Soongduk Economics & Business Building)	⑪ 진리관 (Veritas Hall)
③ 문화관 (Cultural Hall)	⑫ 조만식기념관 (Jo Mansik Memorial Hall)
④ 안익태기념관 (Ahn Eaktai Conservatory Hall)	⑬ 한국기독교박물관 (The Korean Christian Museum)
⑤ 형남공학관 (Hyungnam Memorial Engineering Building)	⑭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⑥ 교육관 (Education Building)	⑮ 연구관 (Faculty Research Building)
⑦ 백마관 (Baekma Hall)	⑯ 창신관 (Innovation Hall)
⑧ 한경직기념관 (Rev. Han Kyungchik Memorial Hall)	⑰ 글로벌브레인홀 (Global Brain Hall)
⑨ 신양관 (Sinyang Hall)	⑱ 레지던스홀 (Residence Hall)
	⑲ 전산관 (Computer Science Building)
	⑳ 미래관 (Vision Hall)
	㉑ 정보과학관 (Information Science Building)
	㉒ 웨스트민스터홀 (Westminster Hall)
	㉓ 학생회관 (Student Union Building)
	㉔ 창의관 (Creativity Hall)
	㉕ 대운동장 (Main Stadium)
	A 정 문 (Front Gate)
	B 중 문 (Middle Gate/Main Parking Entrance)
	C 남 문 (South Gate/Parking Entrance)
	D 북 문 (North Gate)
	E 조만식기념관 지하주차장진입로 (Parking Entrance)

■ 교통 안내



지하철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⑦번 출구
(⑦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학교 정문입니다)



버스

간선 버스 501, 506, 641, 650, 750, 742, 752, 753
지선 버스 5511, 5517
공항 버스 6019



승용차

용산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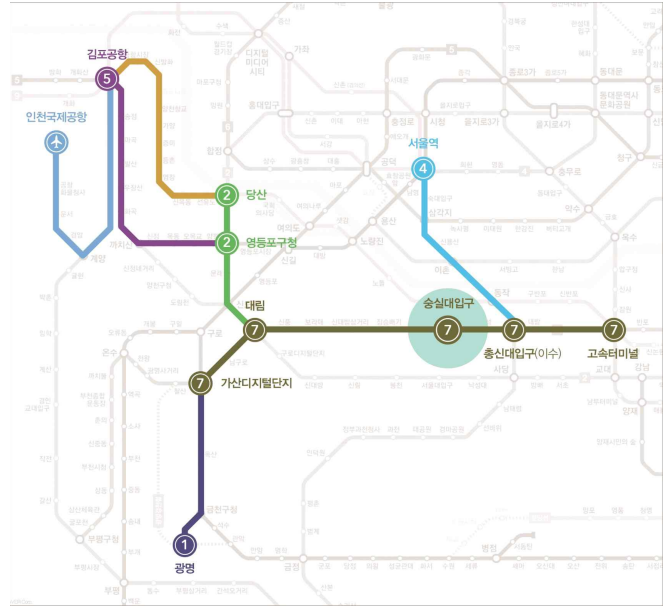
용산 ▶ 한강대교 ▶
상도터널 ▶ 상도사거리에서 좌회전 ▶
송실대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220m 직진 ▶
송실대학교 중문

장승배기 방면

장승배기 ▶ 상도동우체국 ▶
상도동성당 ▶ 상도동사거리 직진 ▶
송실대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220m 직진 ▶
송실대학교 중문

이수사거리 방면

이수사거리 ▶ 남성역 ▶
충신대 ▶ 백운소방파출소 ▶
송실대학교 남문에서 180m 직진 ▶ 송실대학교 중문



【송실대학교 정문 전경】

송실대학교 입학처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전화 (02)820-0050~3(입학안내)

팩스 (02)820-0022

admission.ssu.ac.kr

